118상담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

제정 2020. 8. 28. 개정 2022. 9. 28. 개정 2022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1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118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 9. 28.>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감정노동"이란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하다.
- 2. "118상담센터"란 개인정보, 불법스팸, 해킹·바이러스, 진흥원 사업문의 등의 업무와 관련 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하부조직을 말한다.
- 3. "상담업무"란 전화·인터넷·우편·팩스·방문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, 안내,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상담사"란 118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민원인"이란 118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다.
- 6."악성민원"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, 폭언, 협박,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, "강성민원"은 민원요지 불명, 동일내용 반복·억지민원, 장시간 통화,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상담사 보호조치) 상담센터의 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
 - 2.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
 - 3.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절차 마련
 - 4.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
 - 가.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 등(이하 "폭언등"이라 한다)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

사기관 등에 고발

- 나.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, 고발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 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, 절차적 지원
- 다.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
- 라.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정하는 사항

제4조(악성·강성민원의 유형) 악성·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악성·강성민원 처리 기준) 상담사가 수행하는 악성·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사가 악성·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.

제6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118상담센터가 속한 주요조직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이 지침의 악성·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118상담센터 상담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조사·불법스팸조사 및 법령해석 등의 민원 및 신고 처리 업무 담당자에게도 적용한다.<개정 2022. 12. 23.>

부 칙<2020. 8.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9. 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악성·강성민원 유형(제4조 관련)

- 1. 욕설, 폭언, 협박, 모욕, 반말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, 욕설, 폭언, 협박, 모욕, 반말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
- 2. 성희롱

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

3. 민원요지불명

118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

- 가.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려 요지파악이 어려운 통화
- 나. 본인의 정치적 성향·종교·지식 등을 상담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통화

4. 반복·억지민원

- 가.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
- 나. 118 상담업무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
 - 1) 118 상담업무가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제기
 - 2) 타기관 상담사, 공무원 응대태도 불만에 대해 민원처리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118에서 처리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
 - 3) 118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담을 강요하며 상담사 안내에 꼬투리를 잡으며 불만제기

5. 장시간 통화

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,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아 상담사가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가. 연결이 어려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전화연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상담사의 말꼬리를 잡으며 장시간 통화
- 나.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으나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려하지 않고 장시간 통화지속

6. 상습 강요 민원

- 가. 인입되자마자 민원인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부서 또는 담당상 담사 등을 연결해 달라고 3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
- 나.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, 상담사, 상담사(팀장) 연결을 요구하는 경우
- 다. 명확한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행위

[별표 2]

악성·강성민원 처리 기준(제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차단기간 중 해당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전화상담 통화를 요청할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가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.
- 나. 이용 정지 기간 중 민원인이 문자 등을 통해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문자로 통보한다.

2. 개별기준

가, 욕설·폭언·협박·모욕·반말 등 언어폭력

구분		처리절차	
1단계	언어폭력 중지 경고	① 1차 경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IVR 응대	
2단계	악성민원 등록	팀장 보고 및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	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 (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)	
4단계	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	이용 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·고발 검토	

- ※ IVR(Interactive Voice Response) : 음성 자동 응답
- ※ APP(Application) : 상담사가 상담업무(전화받기, 전화걸기, 상담지식 검색, 상담이력 조회 및 저장 등)를 유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

나. 성희롱

구분		처리절차	
1단계	성희롱 중지 경고	1차 법적조치 경고 및 IVR 응대종료	
2단계	악성민원 등록	팀장 보고 및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	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	
4단계	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	재발 시 1개월 반복 이용 정지 및 법적 고소·고발 검토	

다. 민원요지불명

구분		처리절차	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	3차 경고 및 IVR 응대 종료	
2단계	강성민원 등록	강성민원 등록 팀장 보고 및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	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 (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)	

라. 반복·억지민원

구분		처리절차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	3차 경고 및 IVR 응대 종료
2단계	단계 강성민원 등록 팀장 보고 및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	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 (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)

마. 장시간 통화

구분		처리절차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	3차 경고 및 IVR 응대 종료
2단계	강성민원 등록	팀장 보고 및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 (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)

바. 상습 강요 민원

구분		처리절차
1단계	민원응대	① 매월 2회까지 민원 요청사항 응대 및 경고 ② 3회차 요청시 경고 및 IVR 응대 종료
2단계	강성민원 등록	팀장 보고 및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
3단계	이용 정지	7일간 이용 정지 (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)

사. 대면응대 : 폭언·욕설(고성, 협박 포함)

구분		처리절차
1단계	진정 요청	폭언 중단 요청(관리자 및 안전요원 동원)
2단계	1차 경고	관련법률 저촉 안내 및 녹음 실시 고지
3단계	2차 경고 및 경찰 신고	법적 대응 고지 및 경찰 신고

아. 대면응대 : 폭력 발생, 집기 또는 물품 등 파손

구분		처리절차	
1단계	진정 요청	폭력 중단 요청(관리자 및 청원경찰 동원)	
2단계	경고 및 경찰신고	동료 및 안전요청 등이 민원인 제지 및 경찰 신고	

자. 온라인 민원 및 문서 상 폭언·성희롱 등

구	분	처리절차
1단계	폭언 등 확인	온라인 민원, 문서 상의 폭언 등 확인 - 민원 내용이 있고 폭언 등을 사용한 경우와 민원내용이 없고 폭언 등만 사용한 경우로 구 분하여 분류
2단계	경고문 발송	[민원내용이 있고, 폭언 포함된 경우] 민원인에게 경고공문 통지 - 민원 내용이 있으나, 일부 폭언(욕설등)이 사용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민원 회신과 함께 일부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*가 포함된 경고공문 통지 * 귀하께서 2020.1.00자 민원(제목:00) 내용 중에 표현한 "XXX"는 「00법」제0조제0항에 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 앞으로도 동일 표현을 사용하시면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민원내용이 없고, 폭언만 있는 경우] 법적조치 경고공문* 통지 - 문서 등에 표현된 폭언만으로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통지 * 귀하께서 2020.1.00자 민원(제목:00) 내용 중에 표현한 "XXX"는 「00법」제0조제0항에 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표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단계		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 앞으로도 동일 표현을 사용하시면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민원내용이 없고, 폭언만 있는 경우] 법적조치 경고공문* 통지 - 문서 등에 표현된 폭언만으로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통지 * 귀하께서 2020.1.00자 민원(제목:00) 내용 중에 표현한 "XXX"는 「00법」제0조제0항에 의한 00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표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법적

악성·강성민원 세부 응대 절차(제5조 관련)

1. 욕설/폭언/협박/모욕/반말 등 언어폭력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언어폭력 중지 경고	① 1차 경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IMR 응대	<1차 경고> "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,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. 상담 받고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" <2차 경고> "언어폭력이 지속되어 더 이상 상담이 어려워 통화 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선생님의 말씀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7에 따라 언어폭력에 해당되어 법적인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2단계	악성민원 등록	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(언어폭력)	악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
4단계	효과가 없을 경우	법적 고소고발 검토	이용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·고발 검토

2. 성희롱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성희롱 중지 경고	① 1차 경고 (IVR 전환) ② 팀장 보고	<1차 경고> "선생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으로 상담이 어렵습니다. 통화 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선생님의 말씀은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3조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			※ 재발 시 30일로 안내
2단계	악성민원 등록	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(성희롱)	악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 ※ 재발 시 31일차 해제
4단계	효과가 없을 경우	법적 고소고발 검토	재발 시 1개월 반복정지 및 법적 고소·고발 검토

3. 민원요지불명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	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IVR 응대	<1차 경고> "선생님,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." <2차 경고> "선생님,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." <3차 경고> "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. 통화 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. 상담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2단계	악성민원 등록	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(민원요지불명)	강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

※ 재발시 반복 이용정지

4. 반복·억지민원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	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(IVR 전환) → 답변 횟수 제한 : 3회	<1차 경고> "선생님,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" <2차 경고> "선생님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." <3차 경고> "선생님, 재차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118상담센터의 업무를 벗어났거나 처리불가한 내용을 반복적인 문의 및 요청 시 상담이 불가합니다.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2단계	악성민원 등록	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(반복억지민원)	강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

※ 재발시 반복 이용정지

5. 장시간 통화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	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(IVR 전환) → 답변 횟수 제한 : 3회	<1차 경고> "선생님,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" <2차 경고> "선생님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." <3차 경고> "선생님, 재차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118상담센터의 업무를 벗어났거나 처리불가한 내용을 반복적인 문의 및 요청 시 상담이 불가합니다.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2단계	악성민원 등록	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(반복억지민원)	강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

※ 재발시 반복 이용정지

6. 상습 강요 민원

구분	내용	처리 프로세스	세부 응대 프로세스
1단계	민원응대	① 1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② 2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③ 3차 경고(IVR 전환) → 답변 횟수 제한 : 월 2회	<1차 인입> "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." "문의내용 없이 전화(연결) 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" <2차 인입> "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." "문의내용 없이 전화(연결) 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" <3차 인입> "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. 통화종료하겠습니다." → 멘트 구사 후 팀장 보고 후 IVR 전환 <ivr 경고멘트="" 자동송출=""> 명확한 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선생님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2단계	악성민원 등록	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(상습강요민원)	강성민원 등록 시,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
3-1단계	이용 정지	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	<ivr 멘트="" 연결불가="" 자동송출="">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, 선생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</ivr>
3-2단계	정지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	이용정지 8일차 해제

※ 재발시 반복 이용정지

- 7. 이용정지 기간 중 문자 등을 통한 상담 또는 아웃콜 요청 시
- 전화민원 응대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이용정지 및 제한 응대멘트 송출

"118상담센터입니다.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."